

서울특별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262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4년 10월 16일
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「서울특별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」에서 준용하고 있는 「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」 전부개정으로 시민부문이 폐지됨에 따라 해당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동 조례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우수제안의 선정 및 시상에 관한 조항 현행화(안 제13조제2항)
- 나. 위원회 조항 재정비(안 제19조 및 제22조)
- 다. 기타 경미한 사항 수정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해당없음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- 다. 협의사항

- (1) 법무담당관(규제심사): 규제없음
- (2) 예산담당관(비용추계)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
- (3) 감사담당관(부패영향평가): 평가제외
- (4) 양성평등담당관(성별영향평가): 개선사항 없음
- (5) 평가담당관(공공갈등진단): 갈등사항 없음
- (6) 조직담당관(위원회 신설): 해당없음

(7)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·본부·국 검토의견:
해당없음

라. 기타

(1) 입법예고(2024. 8. 8. ~ 8. 28.) 결과: 의견없음

(2) 신·구조문 대비표: 붙임

※ 작성자 : 홍보기획관 콘텐츠담당관 최재혁(☎ 2133-6532)

서울특별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정의는”을 “뜻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“시민””을 ““시민””으로, ““시””를 ““시””로 한다.

제2조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“시민제안””을 ““시민제안””으로, “이하“시장””을 “이하 “시장””으로 하며, 같은 호 나목 중 “「민원처리에 관한 법률」”을 “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”로 한다.

제1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② 우수제안의 선정 및 시상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제19조제1항 중 “위원장”을 “위원장 1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-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22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하고, 같은 조 제3항, 제4항 및 제5항을

각각 제1항, 제2항 및 제4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시민참여 업무담당 부서장(4급 상당)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<u>정의</u>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<u>시민</u>”이란 「지방자치법」 제1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(이하 “<u>시</u>”라 한다)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를 말한다.</p> <p>2. ~ 4. (생략)</p> <p>5. “<u>시민제안</u>”이란 시민이 서울특별시(이하“<u>시장</u>”이라 한다)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·행정서비스·행정문화·행정운영의 개선 등 시의 사무와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.</p> <p>가. (생략)</p> <p>나. 「<u>민원처리에 관한 법률</u>」 제2조에 따른 민원</p> <p>다. ~ 마. (생략)</p> <p>6. (생략)</p> <p>제13조(우수제안의 선정 및 시상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<u>우수제안 및 우수제안자에 관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서울</u>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 <u>뜻은</u> -----.</p> <p>1. “<u>시민</u>”----- ----- ---“<u>시</u>”----- -----.</p> <p>2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“<u>시민제안</u>”----- -----<u>이하 “시장”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가. (현행과 같음)</p> <p>나. 「<u>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</u>」 제2조에 따른 민원</p> <p>다. ~ 마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3조(우수제안의 선정 및 시상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우수제안의 선정 및 시상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</u></p>

창의상 운영 조례」 중 제안 및 수상자에 관한 사항으로 같음한다.

제19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~ ④ (생략)

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시민 참여 업무담당 부서장(4급 상당)으로 한다.

<신설>

제22조(위원회의 운영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<신설>

③·④ (생략)

한다.

제19조(위원회의 구성) ① -----
-- 위원장 1명-----
-----.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22조(위원회의 운영) <삭제>

<삭제>

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시민 참여 업무담당 부서장(4급 상당)으로 한다.

①·② (현행 제3항 및 제4항과

⑤ (생략)

같음)

④ (현행 제5항과 같음)

서울특별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해당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에 해당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 ① 의원·위원회·시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·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3. 미첨부 사유

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형식의 규정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 불필요

4. 작성자

홍보기획관 콘텐츠담당관 최재혁(☎ 2133-6532)